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103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규상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21. 1. 19.

판결 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440,429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1,428,571원, 피고 C은 1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1.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 2012. 12. 27. 2,000만 원, 2 2016. 2.2. 1,000만 원, 3 2017. 7. 1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2019. 8.경 사망함에 따라 위 대여금 4,000만 원(= 위 1항2,000만 원 + 위 2항 1,000만 원 + 위 3항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428,571원(= 위 대여금 4,000만 원 × 피고들의 법정상속분 각 2/7)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법원 본래의 직책이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자 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한 결과 발생한 법률효과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95 판결 등 참조).

2)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1)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대법원 1981.9. 8. 선고 80다2649 판결 등 참조),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2. 12. 27. 원고와 사이에,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3. 12. 27.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27일에 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선납하기로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2. 1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망인은 2016. 2. 2. 원고와 사이에,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2일에 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선납하기로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6.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망인은 2017. 7. 19. 원고와 사이에, 1,000만 원을 망인에게 이자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8. 7. 18.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19일에 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선납하기로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7. 7.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망인은 원고에게, 1 2012. 12. 27.부터 2017. 7. 27.까지 56회에 걸쳐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27일에 50만 원(=이 사건 제1 대여원금 2,000만 원 × 월 2.5%)씩을 지급하였고, 2 2016. 2. 2.부터 2017. 7. 2.까지 18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2일에 25만 원(= 이 사건 제2 대여원금 1,000만 원 × 월 2.5%)씩을 지급하였으며, 3 2017. 7. 19. 이 사건 제3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 이자로 월 25만원(= 이 사건 제3 대여원금 1,000만 원 × 월 2.5%)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19. 8. 17.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2) 판단

가) 위 나.의 1)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제1, 2, ③ 각 소비대차계약에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2, ③ 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제한법 및 이 사건 규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연 30%(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는바, 위 나.의 2)항의 관련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③ 각 소비대차계약상 위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 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자 약정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이 사건 제1, 2, ③ 각 대여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2014. 7. 15. 이후 원고가 위 1)의 라)항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충당을 하면, ① 이 사건 제1 대여원금은 별지 총당액 계산표 1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2017. 7. 27.경 14,478,698원(이하 '이 사건 제1 잔여 대여원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었고, ② 이 사건 제2 대여원금은 별지 총당액 계산표 2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2017. 7. 2.경 8,805,956원(이하 '이 사건 제2 잔여 대여원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었으며, ③ 이 사건 제3 대여원금은 별지 총당액 계산표 3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2017. 7. 19.경 9,756,849원(이하 '이 사건 제3 잔여대여원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었다.

결국 망인은 2017.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③ 각 소비대차계약상 각 대여원금으로 이

사건 제1, 2, ③ 각 잔여 대여원금 합계 33,041,503원(= 이 사건 제1 잔여 대여원금 14,478,698원 + 이 사건 제2 잔여 대여원금 8,805,956원 + 이 사건 제3 잔여 대여원금 9,756,8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이내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또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2019. 8. 17.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3 각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 게, 이 사건 제1, 2, ③ 각 잔여 대여원금 합계 33,041,503원의 채무 중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각 9,440,429원(= 위 33,041,503원 × 피고들의 법정상속분 각 2/7,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9,440,429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이하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가.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는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1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2019. 11. 13.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13.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2)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무인 각 9,440,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재항변 요지

E가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2019.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E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02200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9. 11. 13.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망인의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누락하였는바, 이 경우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에 따른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의사로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①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입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인은 2019. 8. 14.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③ 피고들이 2019.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망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복귀되어야 하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귀속뿐만 아니라 등기의 원인과 절차에도 미치는바(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다26369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E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E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② 피고들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망인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했을 때에는 아직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소유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할 경우 공동상속인인 E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뿐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과정에서 망인의 재산목록에 기입해야 할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는 점 등을 위 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이 사건각 부동산을 망인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별지 부동산 목록

1. 김포시 F 대 330㎡

2. 김포시 F 지상

목조 목조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90㎡, 2층 90㎡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5㎡(주차장), 2층 115㎡(음식점)

별지 증당액 계산표 2

* 계산 정보											
과점명	과점발생일	과점액(원)	이행기	최초 계상일	연 이율(%)	과점시점	과점 원금				
과점발생	2018.01.01	20,000,000	2018.12.31	2018.01.01	3%	2018.01.01	20,000,000				
* 증당 정보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이자 이율 (%)	석각일	당료일	발생 이자	이자 누계액	증당 순원	이자 증당	원금 증당	이자 금액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00,000	600,000	1	600,000	20,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800,000	1,200,000	1	1,800,000	21,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700,000	3,900,000	1	2,700,000	24,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600,000	7,500,000	1	3,600,000	28,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500,000	12,000,000	1	4,500,000	32,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400,000	17,400,000	1	5,400,000	38,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300,000	23,700,000	1	6,300,000	44,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7,200,000	30,900,000	1	7,200,000	51,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8,100,000	39,000,000	1	8,100,000	59,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9,000,000	48,000,000	1	9,000,000	68,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9,900,000	57,900,000	1	9,900,000	78,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0,800,000	68,700,000	1	10,800,000	89,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1,700,000	80,400,000	1	11,700,000	101,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2,600,000	93,000,000	1	12,600,000	113,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3,500,000	106,500,000	1	13,500,000	127,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4,400,000	120,900,000	1	14,400,000	141,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5,300,000	136,200,000	1	15,300,000	156,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6,200,000	152,400,000	1	16,200,000	173,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7,100,000	169,500,000	1	17,100,000	190,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8,000,000	187,500,000	1	18,000,000	208,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8,900,000	206,400,000	1	18,900,000	227,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19,800,000	226,200,000	1	19,800,000	246,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0,700,000	246,900,000	1	20,700,000	267,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1,600,000	268,500,000	1	21,600,000	289,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2,500,000	291,000,000	1	22,500,000	311,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3,400,000	314,400,000	1	23,400,000	335,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4,300,000	338,700,000	1	24,300,000	359,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5,200,000	363,900,000	1	25,200,000	384,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6,100,000	389,900,000	1	26,100,000	410,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7,000,000	416,900,000	1	27,000,000	437,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7,900,000	444,800,000	1	27,900,000	465,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8,800,000	473,600,000	1	28,800,000	494,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29,700,000	503,300,000	1	29,700,000	524,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0,600,000	533,900,000	1	30,600,000	554,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1,500,000	565,400,000	1	31,500,000	586,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2,400,000	597,800,000	1	32,400,000	618,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3,300,000	631,100,000	1	33,300,000	651,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4,200,000	665,300,000	1	34,200,000	686,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5,100,000	700,400,000	1	35,100,000	721,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6,000,000	736,400,000	1	36,000,000	757,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6,900,000	773,300,000	1	36,900,000	794,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7,800,000	811,100,000	1	37,800,000	831,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8,700,000	849,800,000	1	38,700,000	870,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39,600,000	889,400,000	1	39,600,000	910,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0,500,000	930,000,000	1	40,500,000	950,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1,400,000	971,400,000	1	41,400,000	992,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2,300,000	1,013,700,000	1	42,300,000	1,034,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3,200,000	1,056,900,000	1	43,200,000	1,077,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4,100,000	1,100,900,000	1	44,100,000	1,121,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5,000,000	1,145,900,000	1	45,000,000	1,166,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5,900,000	1,191,800,000	1	45,900,000	1,212,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6,800,000	1,238,600,000	1	46,800,000	1,259,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7,700,000	1,286,300,000	1	47,700,000	1,307,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8,600,000	1,334,900,000	1	48,600,000	1,355,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49,500,000	1,384,400,000	1	49,500,000	1,405,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0,400,000	1,434,800,000	1	50,400,000	1,455,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1,300,000	1,486,100,000	1	51,300,000	1,506,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2,200,000	1,538,300,000	1	52,200,000	1,559,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3,100,000	1,591,400,000	1	53,100,000	1,612,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4,000,000	1,645,400,000	1	54,000,000	1,666,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4,900,000	1,700,300,000	1	54,900,000	1,721,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5,800,000	1,756,100,000	1	55,800,000	1,776,8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6,700,000	1,812,800,000	1	56,700,000	1,833,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7,600,000	1,870,400,000	1	57,600,000	1,891,1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8,500,000	1,928,900,000	1	58,500,000	1,949,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59,400,000	1,988,300,000	1	59,400,000	2,009,0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0,300,000	2,048,600,000	1	60,300,000	2,069,3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1,200,000	2,109,800,000	1	61,200,000	2,130,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2,100,000	2,171,900,000	1	62,100,000	2,192,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3,000,000	2,234,900,000	1	63,000,000	2,255,6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3,900,000	2,298,800,000	1	63,900,000	2,319,500,000	0
2018.01.01	20,000,000	20,000,000	3%	2018.01.01	2018.01.01	64,800,000	2,3636,6				

별자 총당역 계산표 3												
별자 총당역												
계좌번호	계좌명	계좌잔액(원)	잔액기	최초 계좌잔액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123456789	2017.07.18	10,000,000	2017.07.18	2017.07.18	25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별자 총당역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별자 총당역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별자 총당역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잔액기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2017.07.18

1) 이 사건 규정은 2014. 7. 15.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그 개정 규정은 2018. 2.8.부터 시행되었다.

